배 상 결 정 통 지 서

(259-4576) 1999 . 4 . 15.

사건번호:전주배심 98 년 협제 제15호

주 소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8-141

성 명 :김두일 외 1

귀하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배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배상금 지급 해당 행정청인 전주지방검찰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지급을 청구 (우송 또는 직접제출) 하시기 바람.

(1) 동의 및 청구서 2통

(2) 배상결정서 정본 1통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0.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통

0.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 -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각 2통

0. 대리인이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4) 비 고

0.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등 필요한 사항을 동의 및 청구서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배상결정에 부동의 할 경우

부동의서 1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2개월이내에 배상금 지급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시기 바람

첨부: 1. 배상결정서 정본 1통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2통

3. 부동의서 용지 1통 . 끝.

전 주 지 구 배 상 심 의 회 위 원 장

배 상 결 정 서

사건번호	전주지구배심	98년	협제 15 호

신청인

주 소 : 별지 신청인 표시표와 같음. 성 명 : 김 두 일 외 1인
생년월일 : 피해자와의 관계 : 각 본인
위 신청인의 대리인 :

주문

신청인들에게 금 891,550원을 지급한다.

사고상황

피해자 주소 :
피해자 성명 : 신청인과 같음. 생년월일:

사고발생 일시 : 1989. 9. 10.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
사고발생 장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8의 141
가해자 소속 : 미공군 군산기지 헌병대
사고 내용 : 총기오발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유무

국 가	자 치 단 체	과실상계	손익상계
☑ 책임 있다 ☐ 책임 없다	☐ 책임 있다 ☐ 책임 없다	☐ %로 한다 ☐ 하지 아니한다	☐ %로 한다 ☐ 하지 아니한다

결정이유

"별 지"

사고와 관련되어 받은 금액

내 역	지 급 관 서	액 수	일 자	배상과의 관계
위로금	미공군 군산기지 헌병대	150,000원		공제불가

사전 지급 금 액	요양비 : 199 . . . 원 지급 장례비 : 199 . . . 원 지급			
배상액 인용내역	배 상 내 역	신 청 액	인 용 액	비 고
	1. 요 양 비	388,200원	기 각	
	2. 휴 업 배 상	3,000,000원	기 각	
	3. 장 해 배 상			
	4. 유 족 배 상			
	5. 장 례 비			협정공무사건
	6. 재 산 손 해	891,550원	891,550원	
	7. 위 자 료	20,000,000원	기 각	
	8. 개 호 비			
	계	24,279,750원	891,550원	
상속비 지급액	신 청 인 성 명	비 율	지 급 액	

1999. 3. 17.

전주지구 배상 심의회

위원장 유 성 수

위 원 김 종 오

위 원 박 해 운

위 원 박 범 계

위 원 황 병 연

신 청 인(피해자) 표 시 표

1	주 소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8의 141 성 명 : 김 두 일 직 업 : 음식점 경영 1963 년 5 월 4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2	주소 : 위와 같은 곳 성명 : 여 순 옥 직업 : 음식점 경영 1971 년 2 월 16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3	주소 : 성명 : 직업 : 년 월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4	주소 : 성명 : 직업 : 년 월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5	주소 : 성명 : 직업 : 년 월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6	주소 : 성명 : 직업 : 년 월 일생 피해자와 관계
7	주소 : 성명 : 직업 : 년 월 일생 피해자와 관계
8	주소 : 성명 : 직업 : 년 월 일생 피해자와 관계

비고 : 위 신청인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위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결 정 이 유

1. 이건 배상금지급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군산경찰서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 지은조립식 건축사무소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 및 주한 미군 배상사무소장 작성의 절차 2, 3호서식 회보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 1989. 9. 10. 08:00경부터 12:00까지 사이에 미공군 군산기지 헌병대 소속 상사 메드 테리(Mead Terry)외 15명이 위 기지내 헌병대 전용 사격장에서 해상을 향하여 M-203 유탄발사기로 사격훈련을 하던 중 유탄 1발이 오발로 사격장 언덕밑에 위치한 신청인들의 조립식 건물 패널외벽에 충격, 폭발한 사실

-. 위 사고로 신청인들의 조립식건물 중 패널 외벽 1장이 손괴된 사실

-. 피해자 여순옥은 1998. 9. 21. 체중 2,150그램의 35주 내지 36주 재태기간의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

등이 인정됨.

2. 미군측의 배상책임 유무

가. 재산손해부분에 대하여

(1) 배상책임 유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 소유의 조립식 건물 패널 1장은 미군측의 과실로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미군측의 공무상 배상책임이 인정됨.

(2) 배상범위→ 금 891,550 원

0 수리비 금 891,550 원(지은조립식 건축사무소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

나. 미숙아출산으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하여

(1) 배상책임 유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여순옥이 이건 발생후인 1998. 9. 21. 쌍둥이를 조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한 미군 배상사무소장 작성의 절차 2, 3호 서식, 회보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사고당시 그들의 집에서 약 12-내지 13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는 신청인 김두일 경영의 두일네집 음식점에 있었으며, 미숙아의 출산이 이건 유탄오발로 인한 굉음과 공포에서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그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배상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미군측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2) 신청인들은 신청인 여순옥이 쌍둥이를 조산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98. 10. 20.까지 조산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동안 두일네집 음식점을 경영하지 못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미숙아를 출산한 것이 이건 미군의 유탄오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여순옥의 미숙아 출산이 미군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건 휴업배상 및 요양배상 신청도 이유없음.

(3) 위자료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유탄오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신청도 이유없음.

다. 공제액

피해자들이 미공군 군산기지 헌병대 관계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50,000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군산경찰서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 이는 단순한 위로금으로 증여받은 것이지 피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음.(불법행위자로부터 위로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이 있음.)

3. 결론

신청인들에게 금 891,550 원을 지급함.